

개인회생절차 안내도

개인회생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

- 중지명령·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-

중지명령·금지명령

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

- 신청일부터 1월 이내 -

개인회생채권자집회

- 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-

변제계획인가결정

- 신용불량 등록 해제 -

변제계획의 수행

면책

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, 신청서와 제출서류 양식을
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개인회생·파산 소송구조제도 안내

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
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소송구조 대상자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 60세 이상인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

지원받는 비용

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
(이와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)

서울회생법원 뉴 스타트(New Start) 상담센터

맞춤형 상담 및 전화상담실 운영

✓ 맞춤형 상담

- 개인회생·파산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
-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상담위원 POOL 구성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상담위원을 선택할 수 있음
-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위원의 소속과 성명, 상담가능시간 고지
- 상담내용
 - 개인회생·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 및 상담
 - 신청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발급 요청 안내
 - 개인회생·파산 관련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
 - 외부연계기관 안내
 -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
 -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도 금요일 오후에 가능

✓ 전화 상담

- 이제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채무자가 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상담위원의 전화상담 가능

✓ 뉴스타트상담센터 1호선 (02-3016-4942)

	월	화	수	목	금
오전 10~12시					파산관재인(상속재산 파산상담 가능)
오후 12~2시					휴식시간
오후 2~4시	소송 구조지정 변호사	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	신용회복 위원회	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	회생위원 (진임)
오후 4~6시			개인파산·회생 지원변호사		

✓ 뉴스타트상담센터 2호선 (02-3016-4943)

	월	화	수	목	금
오후 2~6시			법무사 상담위원	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(법인상담)

✓ 서울회생법원(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) 1층



월~금 10~18시, 토·일 및 공휴일 휴무
02-3016-4942, 4943 (전화상담 가능)



더 나은 내일을 DREAM니다.

개인회생제도

매우 좋은 제도이며
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제도의
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.

- 채무자 B씨 -

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
있게 되어 감사합니다.

- 채무자 A씨 -



더 나은 내일을 DREAM합니다.

개인회생제도란?

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
채무자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,
일정 기간(1년 6개월~5년) 동안
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
(원금, 이자)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.



개인회생 이용대상은?

첫째

소득자이어야 합니다.

- 월급, 연금, 사업, 그밖에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.
- 아르바이트,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활동을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둘째

채무한도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.

- 신청 당시 채무의 총합계액(원금, 이자합산)이 담보부채무 15억 이하, 무담보채무 10억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.

셋째

채무를 갚는 게 불가능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.

-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 있고, 현재 소득수준에 비추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.



★ 개인회생제도 특징

추심 해방



- 개시결정 이전 이미 진행된 추심행위에 관하여 중지명령 금지명령 신청할 수 있음
- 개시결정 이후 일체의 추심 금지

분할 상환



-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(1년 6개월~5년) 분할 상환
-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월 납부

채무 감면



-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전부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나면 나머지 채무를 전부 면제



▣ 월 변제액 산정방법

$$\text{월 변제액} = \text{월 수입} - \text{월 생계비}$$

월 수입에서 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.

월 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,096,699원을 원칙으로 하되, 주거비 등 추가소요를 입증하면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
기준 증위소득의 100분의 60	1,096,699	1,852,847	2,390,370	2,925,774

※※

서울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 50만 원을 부담하는 채무자 A씨의 월 소득이 1,822,480원인 경우 생계비는 1,401,487원(기본생계비 1,096,699원 + 추가생계비 304,788)으로 월 변제금은 420,993원입니다.

* 추가생계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서울화성법원 홈페이지
'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' 참고

월급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지명령·금지명령

-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
결정 전에도 채무자가 중지명령·금지명령을
신청한 때에는 채무자의 압류·가압류 등의
절차를 중지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
- 중지·금지명령 이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
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.



▣ 변제기간 단축제도 실시 안내

- 변제기간은 기본 3년, 최장 5년입니다.

- 일정한 경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.

-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입 및 지출, 채무부담경우, 변제계획의
인가요건 등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채무자의 사정	구체적인 대상	변제기간
월금 전부 변제 가능	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월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	월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 월금의 변제기간으로 함
고령자	만 65세 이상	3년 미만
장애인	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	
청년	만 30세 미만	
다자녀	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	
한부모 가족	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	

▣ 개인회생 유의사항

-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진실하고 성실히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일에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
하여야 합니다. 3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절차가 폐지되고 다시 압류가
들어오는 등 손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무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.
인가 이후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.
- 재산은닉, 허위 부당증가, 허위진술, 보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
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고,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